##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205)

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공고 제2022-226호, 2022. 12. 1., 제정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##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205)

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공고 제2022-226호, 2022. 12. 1., 제정]

국립소방연구원(소방정책연구실), 041-559-0587

- 1. 일반사항
- 1.1 적용범위
- 1.1.1 이 기준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.
- 1.2 기준의 효력
- 1.2.1 이 기준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- 1.2.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「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205)」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.
- 1.3 기준의 시행
- 1.3.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.4 기준의 특례
- 1.4.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·개축·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누전경보기의 배관·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- 1.5 경과조치
- 1.5.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5)」에 따른다.
- 1.5.2 이 기준 시행 전에 1.5.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 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.
- 1.6 다른 법령과의 관계
- 1.6.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- 1.7 용어의 정의
- 1.7.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7.1.1 "누전경보기"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,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,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.
- 1.7.1.2 "수신부"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(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- 1.7.1.3 "변류기"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.
- 1.7.1.4 "경계전로"란 누전경보기가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대상 전선로를 말한다.
- 1.7.1.5 "과전류차단기"란 「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」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.
- 1.7.1.6 "분전반"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.
- 1.7.1.7 "인입선"이란「전기설비기술기준」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것으로서, 배전선로에서 갈라져서 직접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.
- 1.7.1.8 "정격전류"란 전기기기의 정격출력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.

## 2. 기술기준

- 2.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등
- 2.1.1 누전경보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.
- 2.1.1.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, 60 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. 다만,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.
- 2.1.1.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,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. 다만,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.
- 2.1.1.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
- 2.2 수신부
- 2.2.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, 가연성의 증기 ·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.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.
- 2.2.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・ 방식・방습・방온・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렇지 않다.
- 2.2.2.1 가연성의 증기・먼지・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・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
- 2.2.2.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
- 2.2.2.3 습도가 높은 장소
- 2.2.2.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
- 2.2.2.5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
- 2.2.3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,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.

## 2.3 전원

2.3.1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「전기사업법」제67조에 따른 「전기설비기술기준」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- 2.3.1.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,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(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)를 설치할 것
- 2.3.1.2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
- 2.3.1.3 전원의 개폐기에는 "누전경보기용"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